

(한국유가공협회 공고 2019 - 2호 : 2019년 1월 2일)

제8차년도 한·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정 및 추천세부요령

1. 근 거
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-173호)

2. 품목 및 물량

- 치즈류 : 8,609톤
- 식용유장분말 : 3,690톤
- 조제분유 : 861톤

3. 품목별 적용 HSK 세번

○ 치즈류

0406.10.1010, 0406.10.1020, 0406.10.1090, 0406.20.0000, 0406.30.0000
0406.90.1000(체다치즈), 0406.90.2000, 0406.90.3000, 0406.90.4000, 0406.90.9000
- 단, 이행 10년차부터 체다치즈는 무관세가 적용되며, 더 이상 관세율 할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○ 식용 유장분말

0404.10.1019, 0404.10.1099, 0404.10.2119, 0404.10.2129, 0404.10.2139
0404.10.2199, 0404.10.2990

○ 조제분유

1901.10.1010, 1901.10.1090

4. 적용기간 : 2019년 1월1일 ~ 2019년 12월31일 까지

5. 적용세율 : 0%

6. 배정 및 추천대상자 : 과거 수입자 및 신규수입자 등 실수요업체

- 본회 공고일 현재 “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”
(구.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을 득 한자에 한함

7. 신청, 배정, 추천 제외대상 :

- 본회 공고일 이후 “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” (구.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을 득 한 업체
- 제7차년도 한·미FTA 관세할당 배정물량 반납 없이 배정물량 이행률 95% 이하인 업체
- 과거 2년간(2017~2018년) 치즈 수입실적 중 FTA로 인해 배정받은 물량만 수입한 업체 (해당품목 : 치즈)
- 과거 2년간(2017~2018년) 치즈 수입물량 중 관세를 납부한 물량이 30%미만인 업체 (해당품목 : 치즈)

8. 신청기간 : 2019. 1. 2~ 1. 11 (2주간)

9. 배정 및 추천대행기관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
10. 배정기준

전체물량의 90%와 10%를 각각 기존업체와 신규업체에 배정

- 기존업체 : 과거 2년간(2017~2018)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
- 신규업체 : 과거 2년간(2017~2018)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

가. 기존업체 배정

-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90%는 기존업체에 1월중 일괄 배정
 - 신청물량은 전년실적 대비 최대 2배만 신청가능
 - 과거 2년간(2017~2018) 대 세계 수입실적 90%와 당해 연도 신청물량 10%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. 단, 필요시 최소량을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
 - 배정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납물량에 포함하여 배정

나. 신규업체 배분

-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10%는 신규업체에 1월중 일괄·균등 배정
 - 업체당 배정물량은 기존업체에 대한 최소 배정량을 초과할 수 없음
 - 배정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업체에 재배정

다. 반납물량 및 미소진 예상량 재배정

- 1월~6월 : 기존방식 적용
 - 배정대상 : 누락된 기존업체 및 신규업체 배분
(본회 공고일 현재 “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”을 득한자에 한함)
- 7월~12월 : 선착순 배정
 - 배정대상 : 신규업체 및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
(단, B/L, 인보이스 등 수입서류 증빙서류 제출 필수)
 - 배정방법 : 동일 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정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

라. 상한선제한

- 물량의 적정배정을 위하여 업체당 배정 상한물량을 전체물량의 20% 이내로 한다

11. 추천 대상 원산지 : 미합중국

12. 추천서 교부

-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(제2016-173호)에 의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·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한다

13. 추천서 유효기간

-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것으로 본다

14. 신청서류

○ 관세할당 물량 배정 신청 시

- (1) 유제품 관세할당물량 배정 희망량 신청서 1부(별지 1)
- (2) 과거 2년간 수입실적 증빙서류
 -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부하는 “납세의무자용 신고건별 수입실적 증명서” (추천대상HS코드, 관세, 부가세 항목 선택)
- (3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4)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
(구.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) 사본 1부

○ 관세할당 물량 배정 후 할당물량 추천 신청 시

- (1) 한·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(별지 2)
- (2) 선하증권 사본1부
- (3) 상업송장 사본 1부
- (4)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(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)
- (5) 원산지 관련 서류 1부

15. 이행율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

- 관세율 할당물량의 완전한 사용촉진 (수입 이행률 95%이상)을 위하여 배정 받은 업체에서 미 이행이 예상되는 쿼터량은 사전 적용기간 종료 2개월 전(2019년 10월 31일)까지 반납하여야 한다
- 이행률 촉진을 위하여 배정받은 업체에서 적용 종료 2개월 전(2019년 10월 31일)까지 반납 없이 관세할당 배정물량의 이행률이 95% 이하일 경우 차기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
- 기타 이행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에게 이행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

16.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
- 신청서 교부 : (사)한국유가공협회 홈페이지(www.koreadia.or.kr)에서 다운로드
- 접수처 : (사)한국유가공협회
 - 신청방법 : E-mail (jms@koreadia.or.kr)담당 조민상 주임 접수
 - 신청서 접수 시 이메일 제목에 “제8차년도 한·미 FTA 신청서 000업체명” 반드시 명기
 -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접수 확인전화 요망
- 문의사항 : (사) 한국유가공협회 한·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 물량 담당 (전화 : 02-584-3631)

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장

